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여 학생창업팀 모집 공고

4대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GRAVITY 2026」 창업리그에 참여할 예비·초기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5. 21.

1 창업리그 개요

- (사업목적)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창업리그인 「GRAVITY 2026」 을 통해 과학기술원 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및 초기 창업팀을 발굴 및 포상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
 - ※ (주최) KAIST, GIST, DGIST, UNIST 공동 주최
- (지원대상)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26. 5. 21.) 기준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 단, 4대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예) 학부 졸업생은 학부생 트랙,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원생 트랙으로 신청
- (접수·문의) 창업리그 공식 홈페이지(gravity2026.io)
- (운영일정)

참가팀 모집	기관별 예선	기관별 본선	통합 본선	통합 결선	후속 지원
서류접수 (기관별)	서류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최종 발표평가 (순위 결정)	글로벌 후속지원
→	→	→	→	→	→
지원자 (적/부)	지원자 → 140팀	140팀 → 40팀	40팀 → 20팀	20팀 → 10팀	10팀
5.21 ~ 6.10	6.11~6.17	7월 초	8월 초	9월 초	9월~12월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운영 체계 >

[기관별 예선] 서류평가 : 총 140팀(학부생 80팀, 대학원생 60팀) 선발

[KAIST]	[DGIST]	[GIST]	[UNIST]
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그룹별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활동비 지급			



[기관별 본선] IR 발표평가 : 총 40팀(학부생/대학원생 각 20팀) 선발

[KAIST]	[DGIST]	[GIST]	[UNIST]
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초기창업교육 및 창업활동비 지급			



[통합본선] IR 발표평가 : 총 20팀(학부생/대학원생 각 10팀) 선발

[통합] 학부생 10팀	[통합] 대학원생 10팀
초기창업교육 및 창업활동비 지급	



[통합결선] 최종 발표평가 : 최종 10팀(학부생/대학원생 각 5팀) 선발

[통합] 학부생 5팀	[통합] 대학원생 5팀
상금 지급	



[후속 지원] 최종 선발 10팀(학부생/대학원생 각 5팀) 대상

[통합] 학부생 5팀	[통합] 대학원생 5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p>공통기준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초기창업자(팀) ※ 단, 4대 과기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신청자격'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iv>
<p>구분</p>	<p>세부자격</p>
<p>예비 창업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통합공고일로부터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p>초기 창업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는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21. 5. 22. 이후 창업)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기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함 - 창업기업은 누적 투자유치 금액 70억 원 이하(Series A 단계 이하) 기업에 한하여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 본 대회 신청기업 외 추가로 보유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모두 창업일 기준 5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 기준일: 2021.5.22. 이후 창업 기업

□ (신청제외대상)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최근 1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기업)
- 최근 3년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통해 누적 상금 1억 원 이상 받은 자(기업)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6. 5. 21.(목) ~ 6. 10.(수), 16:00까지
- (신청방법) 4대 과기원 기관별 신청링크(구글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가자(팀)	①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② 4대 과학기술원 해당 재학(졸업)증명서	팀 內 1인 제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예선 진출자(팀)	①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예비창업자(팀) 해당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초기창업자(팀) 해당
	③ 대표자(팀장)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팀장) 통장사본	
	⑤ 기타 참고자료(수상내역, 특허출원 등)	해당 시

※ 증빙서류는 예선 진출자(팀)을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4 세부 지원내용

□ (단계별 지원내용) 창업활동비, 상금, 창업실무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기관별 예선	맞춤형 멘토링	• 그룹별 맞춤형 전문가(선배창업가·VC) 멘토링 연계·지원
	창업활동비*	• (학부생) 8백만원, (대학원생) 15백만원
기관별 본선	초기창업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교육
	창업활동비*	• (학부생) 20백만원, (대학원생) 30백만원
통합 본선	전문창업교육	• IR Deck 작성법 및 IR 피칭 교육
	맞춤형 컨설팅	• 분야별(AI, 항공우주,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전문가 컨설팅 및 오피스아워 운영·지원
	창업활동비*	• (학부생) 20백만원, (대학원생) 20백만원
통합 결선	상금	• (학부생) 최대 150백만원, (대학원생) 최대 200백만원
	글로벌 프로그램	• 글로벌 VC 주관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창업활동비 사용처는 AI Agent 사용료, 서버 및 클라우드 사용료, PoC 제작 비용 등 창업활동 영위에 필요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함(※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은 별도 안내 예정)

5 단계별 평가방식

□ (개요)

○ 진행일정

기관별 예선	기관별 본선	통합본선	통합결선
기관별 서류평가	기관별 IR 발표평가	통합 IR 발표평가	최종 발표평가
[학부] 지원자 → 80팀 [대학원] 지원자 → 60팀	[학부] 80팀 → 20팀 [대학원] 60팀 → 20팀	[학부] 20팀 → 10팀 [대학원] 20팀 → 10팀	[학부] 10팀 → 5팀 [대학원] 10팀 → 5팀
6.11~6.17	7월 초	8월 초	9월 초

○ 진행방식 : 학부생리그, 대학원리그를 구분하여 ‘기관별 예선 - 기관별 본선 - 통합본선 - 통합결선’ 단계형 구조로 진행

□ (기관별 예선) 기관별 서류평가

- 선정규모 : 총 140팀 / 기관별 35팀(학부생 20팀, 대학원생 15팀)
- 진행방식 : 각 기관별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 결과발표 : 2026. 6. 17(수) 예정, 기관별 홈페이지 내 결과 공고
 - ※ 결과발표 일정은 서류 검토·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시장가능성, 제품경쟁력, 기술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예선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적합성	• 참가자격 충족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적/부	적/부
시장가능성	• 설정한 타겟 고객의 구체성·명확성, 고객의 문제 및 수요에 대한 이해도, 시장확대 및 지속성장 가능성 등	30점	30점
제품경쟁력	• 제안하는 제품·서비스·기술의 경쟁력, 차별성, 시장 경쟁우위 확보 등	30점	40점
기술성	• 제안한 아이디어·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점	100점

※ 예선평가는 기관별로 진행하며 참가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한 팀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관별 본선) 기관별 IR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7월 초 / 기관별 진행
 - ※ 기관별 본선 진출팀 대상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규모 : 총 40팀 / 기관별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 진행방식 : 기관별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모델, 사업화역량, 조직적합성 등 종합평가

< 기관별 본선 세부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사업모델	• 시장 적합성, 고객 수요 반영도, 수익 구조 타당성 등	30점	30점
사업화역량	• 문제정의 명확성, 시장 진입 타당성, 문제 해결 전략과 사업 모델 간 연계성 등	30점	40점
조직적합성	•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전문성, 사업화 기여 가능성, 팀 구성의 균형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점	100점

□ (통합본선) 통합 IR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8월 초 / GIST(학부팀), UNIST(대학원생팀)
- 선정규모 : 총 20팀(학부생 10팀, 대학원생 10팀)
- 진행방식 : 4대 과기원 통합해 대면 형태로 IR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시장검증, 해결역량, 팀 비전 등 종합평가

< 통합본선 세부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시장검증	• 시장문제 및 고객 수요 기반 아이템 기획성, 고객 수요 검증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등	30점	30점
해결역량	• 핵심 경쟁력 및 차별성, 기술적·사업적 진입장벽 확보수준, 지속성장 가능성 등	30점	40점
팀 비전	• 사업 추진 의지 및 창업 실행 가능성, 사업화 수행 역량 및 문제 대응 능력, 조직 운영 계획의 체계성 등	40점	30점
합 계		100점	100점

□ (통합결선) 최종 발표평가

- 일정 및 장소 : 2026. 9월 초 / KAIST
- 선정규모 : 총 10팀(학부생 5팀, 대학원생 5팀)
- 진행방식 : 데모데이 형식의 IR 발표평가를 통해 상위 성적을 거둔 우수팀 최종 선발
- 선정기준 : 시장검증, 시장가치, 성장잠재력 등 종합평가

< 통합결선 세부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학부생	대학원생
시장검증	• 기술적 완성도 및 구현 가능성, 개념검증(PoC) 및 실증 가능성, 사업화 연계성 및 기술 고도화 가능성 등	40점	40점
시장가치	• 수익 모델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 매출 창출 및 시장 성장 가능성, 투자유치 연계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등	40점	30점
성장잠재력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및 확장성, 글로벌 경쟁력 및 차별화 수준, 중장기 성장 비전 및 스케일업 전략	20점	30점
합 계		100점	100점

6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기관별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가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시 탈락될 수 있음
- 수상팀은 향후 5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팀)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예선 및 결선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유료)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가능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본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④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신청서

팀(기업)명 :

제 출 일 : 2026. . .

신 청 자 : (서명)

※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는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2. 본 신청서의 양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 설명을 위해 필요한 이미지(사진) 또는 도면 등이 있을 경우 첨부 요망
3.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4.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되며 별도 반환하지 않음

지원정보(계속)				
팀 구성원	팀원 1		팀원 2	
	성 명	김잡스	성 명	
	휴대전화	010-1234-5678	휴대전화	
	이메일	jobs@kaist.ac.kr	이메일	
	학교명(소속)	KAIST	학교명(소속)	
	학과/과정/상태	전산학부/학사/재학	학과/과정/상태	
	팀원 3		팀원 4	
	성 명		성 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이메일	
	학교명(소속)		학교명(소속)	
	학과/과정/상태		학과/과정/상태	
	팀원 5		팀원 6	
	성 명		성 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이메일	
	학교명(소속)		학교명(소속)	
	학과/과정/상태		학과/과정/상태	
	기타 특기사항	아이템(서비스)와 관련된 대내·외 실적 (관련 수상내역, 특허출원, 정부지원사업 참가 수행내역 등)		

사업계획서 ※ 3장 이내 작성

<p>사업내용 핵심</p>	<p>기술분야, 용도, 성능, 특징, 강점 등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자유롭게 기술 (12줄 이내)</p>
<p>팀원 구성 및 보유 역량</p>	<p>팀 구성원의 역할 및 보유 역량에 대해 기술 (12줄 이내)</p>
<p>아이디어의 디자인</p>	<p>아이디어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표현 예) 사진, 그림, 스케치, 3D 등 (12줄 이내)</p>

사업계획서(계속)

<p>목표고객 및 차별점</p>	<p>기존 제품 서비스와의 차별화 포인트 및 타겟 고객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15줄 이내)</p>
<p>사업화 추진계획</p>	<p>아이디어의 개발에 대한 구현 방법 및 상세한 설명을 자유롭게 기술 (15줄 이내)</p>
<p>기대 효과</p>	<p>국내·외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15줄 이내)</p>
<p>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신청자 : 대표자(팀장) _____ (서명 또는 날인)</p>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창업리그 선정 및 운영,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3. 정보 제공 및 조회범위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등
 - 기업정보 : 기업명, 창업기간, 아이템, 사업계획 등
4.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추진 완료 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귀하의 신청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성 명	학교명(소속)	학과 및 과정	팀 내 직위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팀장	(인)
			팀원	(인)
			팀원	(인)
			팀원	(인)
			팀원	(인)
			팀원	(인)
			팀원	(인)

※ 팀 구성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년 월 일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 (2024.3.15.)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